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본측량성과 해외 반출 예외 범위 명확화 등 》
■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74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제221847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예외 사유 법률 상향(안 제16조제1항)	2
나. 국외 반출 협의체 검토 사항 확대(안 제16조제2항)	9
다. 가공 기본측량성과 무상활용 및 허가취소 등 조치(안 제16조의2 신설)	16
라.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상호주의 규정 (안 제16조의3 신설)	20
마. 부칙	23

I.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제221847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신성범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4. 21.

다. 회 부 일 : 2026. 4. 2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측량성과는 단순 지도가 아닌 국가 핵심 공간정보 인프라로서, 국가 안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현행법 제16조는 기본측량성과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은 단서를 통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국외반출협의체 반출 결정 시 국가안보 이외에 관련산업 영향과 데이터 주권에 대한 검토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예외를 규정한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 단서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데이터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3. 검토의견

가.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예외 사유 법률 상향(안 제16조제 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u>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 ----- ----- ----- <u>다음 각 호의</u> -----.
<신설>	1. <u>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u>
<신설>	2. <u>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u>
<신설>	3. <u>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u>
<신설>	4. <u>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수치지형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u>

<u><신 설></u>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도의 경우(등고선, 발전소, 가스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u><신 설></u>	6. 축척 2만5천분의 1인 영문판 수치지형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형도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기본측량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이고¹⁾,

‘기본측량성과’는 기본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결과²⁾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³⁾ 및 정밀도로지도⁴⁾ 등 정밀지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2)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법에 정의된 바를 따른다.

1. “**기본측량성과**”는 기본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결과를 말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

도의 기준이 되는 측량성과이며⁵⁾, 일반인은 기본측량성과를 열람·복제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음⁶⁾).

다만, 현행법은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⁷⁾.

1.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으로 제작된 것
 2.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
-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밀도로지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한다.
-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8.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으로 제작된 것
 2.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
-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기본측량성과나 기본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복제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은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과 관련하여, 현행법 시행령 제16조상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기본측량성과는 국가의 기본 공간정보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자료라는 점에서, 현행법이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여부를 원칙적으로 허가사항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의 무분별한 국외 유출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이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은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예외 사유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재량을 보다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수치지형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도의 경우(등고선, 발전소, 가스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축척 2만5천분의 1인 영문판 수치지형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형도의 경우

첫째, 현행법 시행령상 예외 사유 중 국제회의 자료 사용, 관광 홍보 목적 제작·반출, 소축적 지도 반출 등은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사항으로서, 법률의 일반성·추상성 및 행정입법의 탄력성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항까지 모두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2009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당시에도, 구(舊) 「측량법 시행령」⁸⁾상 허가 대상이었던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에 대해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시행령 단계에서 허가대상 범위가 조정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술적·행정적 성격이 강한 사항까지 모두 법률에 규정할 경우 기술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둘째, 현행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공공측량성과⁹⁾의 국외 반출 금지 및 예외도 규정¹⁰⁾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본측량성과

8) 2009년에 舊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도 새로 제정되었음.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현행법 제16조만을 개정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이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예외에 관하여도 기본측량성과와 유사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측량성과의 경우에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기본측량성과와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규율 비교 】

구분	기본측량성과(제16조)	공공측량성과(제21조)
국외 반출 원칙	국토교통부장관 허가 필요	
시행령상 예외사유	①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른 상호 교환 ② 교섭, 국제회의,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 ③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 ④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 등 ⑤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보안성 검토)	
	⑥ 축척 2만5천분의 1 영문판 수치지형도(보안성 검토)	-

셋째, 안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제35조의2에서 “보안심사”를 규정¹¹⁾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상 용어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공공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에서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의2(보안심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안심

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인용 규정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보안심사”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¹²⁾.

한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과 관련하여 요건을 강화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안, 제2210846호)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바,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빠른 기술 발전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예외 요건은 법률보다는 시행령에 규정하는 현 체계가 타당하다는 입장임.

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2) “보안성 검토”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률에서 시행령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므로, 법률상 용어인 “보안심사”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보안성 검토 등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국외 반출 협의체 검토 사항 확대(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u>국가안보와</u>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② ----- ----- ----- -----, ----- -- <u>국가안보, 관련 산업에의 영향, 데이터 주권과</u> ----- -----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국가안보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제한¹³⁾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이나 기본측량기록을 복제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없다.

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를 구성하여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¹⁴⁾.

개정안은 현행법상 협의체를 거쳐 예외적으로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 외에 “관련 산업에의 영향” 및 “데이터 주권”에 관련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금지 규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지도의 국외 반출 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舊 「측량법」(1975. 4. 11. 개정·시행)에서 규정¹⁵⁾되었음.

이후, 이러한 국외 반출 금지 규제에 의해 해외의 지도제작업체가 국내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국내 지명의 표기가 잘못되거나, 세계적으로 호환될 수 있는 지도 등의 공간정보서비스 출시가 어려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측량법증개정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090274호)에 대한 본회의수정안(1975.3.19.) 수정이유 참고.

“지도는 지형, 지물 등 국토의 실태를 표시한 것으로서 제작과정에서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보안조치가 되어 있으나, 국외반출의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규정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으로 볼 때, 지도가 국외로 반출됨으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 외에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임.”

위지는 등 국내 지리정보서비스(GIS¹⁶⁾)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¹⁷⁾에 따라,

2014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4. 6. 3. 개정, 2015. 6. 4. 시행)을 통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취지의 제16조제2항 단서가 신설되었음.

이상의 법령 등을 종합하면,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이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허가 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허가 신청 건 중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위원회가 협의체를 통한 국외 반출 결정이 필요하다고 심사·의결한 사안의 경우, 해당 신청 건은 협의체에 상정되어 검토·협의를 거쳐 국외 반출 여부가 결정됨¹⁸⁾.

16)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1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07342호)에 대한 검토보고서 참고.

18) 이와 같은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금지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국토지리정보원예규) 및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국토지리정보원예규)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은 단순히 군사·보안시설 노출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국내 공간정보산업, 모빌리티, 관광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산업에의 영향 및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체의 판단 과정에서 고려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문제의식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측량성과 국외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바¹⁹⁾, 개정안과 같이 국가안보 외에 데이터 주권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과 같은 요소를 협의체 고려 사항에 포함할 경우, 해당 규제가 산업보호적 성격의 규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안이유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여부를 검토할 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 외에도 관련 산업에의 영향 및 데이터 주권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²⁰⁾.

19)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작성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는 우리나라의 측량성과 국외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서 21건의 비관세장벽 중 하나로 지적한 바 있음.(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둘러싼 갈등, 그 해법은?/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5. 11. 2.)

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中

기본측량성과는 단순 지도가 아닌 국가 핵심 공간정보 인프라로서, 국가 안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현행법 제16조는 기본측량성과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은 단서를 통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국외반출협의체 반출 결정 시 국가안보 이외에 관련 산업 영향과 데이터 주권에 대한 검토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16조제2항 단서는 문언상 협의체가 국가안보를 고려 요소로 삼아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라기보다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예외적 반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바,

개정안 문언 역시 관련 산업에의 영향 또는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요소를 추가하는 것이라기보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체 심의대상으로 확대하는 의미로 읽힐 여지가 있음.

따라서 제안이유를 고려할 때, 입법취지가 보다 분명히 드러나도록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개정안의 “관련 산업”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해석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²¹⁾”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데이터 주권”은 법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며,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는 용어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넷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 협의체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외적인 국외 반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협의체 심의 대상이 확대될 경우 협의체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16조제3항은 협의체에 1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관련 산업에의 영향 및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사항까지 심의대상이 확대될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의체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섯째, 현행법 제21조는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및 예외를 함께 규정²²⁾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본측량성과에 관한 제16조만을 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협의체와 관련하여서 기본측량성가와 동일하게 규율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측량성과의 경우에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에서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는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허용 요건을 관련 산업에의 영향, 데이터 주권으로 확대하는 경우, 비관세 장벽 강화 등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가공 기본측량성과 무상활용 및 허가취소 등 조치(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2(국외 반출된 기본측량성과에 대한 조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외 반출된 기본측량성과가 가공된 경우 이를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가 무상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반출 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국외로 반출된 기본측량성과가 가공된 경우 이를 대한민국 국민, 국내 법인·단체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무상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반출 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법 제16조는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에 부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단 기본측량성과가 국외로 반출되면 해당 자료가 추가로 가공되거나 목적 외로 활용하더라도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기본측량성과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예산과 공공 인프라를 통하여 구축한 측량성과라는 점에서, 이를 국외로 반출하여 민간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그 가공성과가 국민과 산업에 환류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고,

국외 사업자가 국내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이용자·기업·정부가 그 결과물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데이터 주권 측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안 제16조의2는 이미 국외로 반출된 기본측량성과를 가공한 경우를 전제로 하면서도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반출된 이후에 다시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어색한 측면이 있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조건 위반 시 “반출 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외로 반출된 자료는 복제·가공·재이전이 용이하므로 허가 취소만으로는 자료 회수나 이용 중단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최근 정부가 제시한 구글 지도 반출 조건에서, 정부는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를 결정하고, 지속적·심각한 조건 불이행 시에는 허가를 중단·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제시한 바 있는데²³⁾, 이를 참고하여 자료의 반환·파기, 재반출 금지, 국내 대리인 또는 책임자 지정, 정기보고, 현장점검, 과태료·제재처분 등 집행수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현행 제16조제1항의 허가대상은 기본측량성과가 아니라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이므로, 안 제16조의2에서도 적용대상을 이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개정안은 “가공”의 의미와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어떠한 수준의 가공행위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23) 국토교통부, “구글社 1:5000 지도 반출 허가 결정”, 보도자료, 2026. 2. 27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용례 등을 참고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해외기업이 데이터를 가공하여 생성한 성과물을 법률로 무상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비관세 장벽 강화 등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라.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상호주의 규정(안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3(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의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의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의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의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개정안은 외국이 대한민국 국민, 국내 법인·단체 또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자국의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

우, 그 국가에 대하여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의 토지 취득·양도에 관한 상호주의 규정이 있으며²⁴⁾,

동 규정 역시 외국이 우리 국민 또는 우리 법인에게 자국 내 토지 권리 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우리도 대등한 수준의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상호주의는 국제법상 일반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법률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성과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취득·양도에 관한 상호주의와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및 가공·활용에 관한 상호주의는 규율 대상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법률에 명문화할 경우 국가별 규제 수준이나 대외관계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제약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명문화의 이익과 현행 규율방식을 유지

24) 유사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경우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미국 등은 우리나라의 측량성과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바, 이러한 상호주의 조항은 대외적으로 측량성과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조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자유무역협정 및 디지털통상 관련 협정과 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단독 판단보다는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현재 지도 반출 규제가 있는 국가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을 위한 법제화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나, 안보, 경제 등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상호주의 법제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마. 부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이 법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16조의3은 상호주의 적용 대상, 제한 범위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의 정비가 필요한 만큼 하위법령 정비와 집행체계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9

참고1

지도 국외반출 신청 현황(최근 10년)

구분	신청	신청자	반출목적	반출대상(지역)	반출지역	허가여부 (불허사유)	협업체 개최
1	'16.2	삼성SDS (국내)	전시회	정사영상(수원 일원)	중국	허가	X
2	'16.5	개인	전시회	정사영상 (서울, 경기, 부산 일원)	이탈리아	허가	X
3	'16.6	Google Inc(외국)	제품개발	1/5천 전자지도 (SKT맵, 전국)	미국	불허(보안 대책불수용)	O
4	'17.1	개인	학술연구	항공사진(제주도 일원)	미국	허가	X
5	'18.1	가민 (외국)	제품개발	내비게이션용 지도(전국)	대만	불허 (안보우려)	X
6	'18.12	링크웨어 (국내)	전시회	3D 내비게이션용 지도 (전국)	미국	허가	X
7	'19.6	개인	학술연구	1/1천 수치지형도, 1/5 천수치지형도, 1/25천 수치지형도(부산시 일원)	일본	허가	X
8	'20.7	개인	학술연구	항공사진	영국	허가	X
9	'20.11	인천대 (국내)	학술연구	항공사진, 정사영상 (서울시 일원)	일본	허가	X
10	'22.10	EAAFP (국내)	화성습지 보전을 위한 공간계획 컨설팅	수치표고모형(화성시, 평택시 일원)	영국	허가	X
11	'22.12	현대오 에버 (국내)	개발테스트(국내 생산 수출차량의 자율주행 기능 테스트)	3차원 공간정보 (울산시, 화성시 일원)	미국	불허(반출물 지도간행심 사 미수검)	X
12	'23.2	Apple inc(외국)	제품개발(애플 지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1/5천 수치지형도 기반 상용 디지털지도(전국)	미국, 싱가폴	불허 (안보우려)	X
13	'23.2	현대오 에버 (국내)	개발테스트(국내 생산 수출차량의 자율주행 기능 테스트)	3차원 공간정보(울산, 화성, 광명시 일원)	미국	허가	X
14	'23.4	현대오 에버 (국내)	개발테스트(국내 생산 수출차량의 자율주행 기능 테스트)	3차원 공간정보(울산, 화성, 광명, 서산 일원)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부 허가(일부 보안지역 제외)	X
15	'23.6	헬셀 (국내)	제품개발(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개발 및 업데이트)	국가 지오이드모델(전국)	스위스	허가	X
16	'24.1	링크웨어 (국내)	개발테스트(차량 내비게이션 S/W 동작 테스트)	1/5천 수치지형도 기반 내비게이션 전자지도 (성남시 일원)	일본	조건부 허가 (국가 중요 시설 보안차 원료 후 반출)	X
17	'25.2	Google LLC(외국)	제품개발(글로벌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통한 소비자의 편의 확대 등)	1/5천 수치지형도(전국)	미국, 해외 데이터 센터	조건부 허가	O
18	'25.4	링크웨어 (국내)	개발테스트(차량 내비게이션 S/W 동작 테스트)	1/5천 수치지형도 기반 내비게이션 전자지도 (성남시 일원)	일본	허가	X
19	'25.6	Apple inc(외국)	제품개발(한국 관련 지도서비스의 수준 향상 등)	1/5천 수치지형도 기반 상용 디지털지도(전국)	미국, 싱가폴	검토 중	O

※ 국외반출 협업체가 미개최된 신청 건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에 따라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

참고2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개최 현황(최근 10년)

신청인	신청일자	반출대상	협의체 개최		비고
			일자	심의결과	
구글社	'16.6.1.	1/5천 전자지도(SKT맵)	'16.6.22.	결정 유보 및 처리기간 연장	
			'16.8.24.	결정 유보 및 처리기간 연장	
			'16.11.18.	불허 (보안대책 불수용)	
구글社	'25.2.18. ('26.2.5. 보완 신청서 제출)	1/5천 수치지형도	'25.5.14.	결정 유보 및 처리기간 연장	
			'25.8.8.	결정 유보 및 처리기간 연장	
			'25.11.11.	신청서 보완 제출 요청 및 결정 유보	
			'26.2.27.	엄격한 보안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애플社	'25.6.16.	1/5천 수치지형도 기반 상용 디지털지도	'25.9.4.	결정 유보 및 처리기간 연장	'25.12.5. 애플社가 신청서 보완 요청